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1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임의자 · 강승규 · 조지연
박수민 · 강명구 · 안철수
서천호 · 이인선 · 이달희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계비속 · 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1명당 150만원의 공제액과 100만원의 소득금액 요건은 오랜기간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제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축소되고 있으며, 20세라는 연령 기준 또한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 부양가

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20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u>150만원</u>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 ----- ----- ----- <u>200만원</u>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u>100만원</u>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 ----- ----- ----- <u>500만원</u> ----- ----- <u>800만원</u> ----- -----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3. ----- ----- ----- ----- ----- ----- -----

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생략)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
자”라 한다)로서 20세 이
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
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
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인 사람

라.·마. (생략)

②·③ (생략)

-----500만원
-----800만
원-----

가. (현행과 같음)

나. -----

-----25세-----
--25세-----

-----.

-----.

다. -----2
5세-----

라.·마.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